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1076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최원진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1. 9. 접수 제781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21. 10.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1. 2. 22.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6. 22. D에게 31,737,5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지급금 476,730원이 발생하였다.

라. B는 2020. 11. 9.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27,868,973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B는 원고를 포함하여 E은행, F은행, G 주식회사,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신용보증재단, L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합계 410,532,4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M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11. 9.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 약 3개월이 경과한 2021. 2. 2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2021. 6. 22. D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에 유공압기기 부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는 매월 C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20. 6. 30. C의 피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이 52,760,480원에 이르자 C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은 2020. 7. 15. 지급받고, 나머지는 2020. 8.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C가 피고에게 2020. 7. 16.과 2020. 8. 4.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0. 6. 30. 이후 2020. 11.경까지 C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실, C의 대표이사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유공압기기 부품을 계속하여 납품하면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20.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0. 11. 13.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2020. 11. 13. 이후로는 익월 말 결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외상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C에 대한 부품 납품을 재개하여 2022. 7. 31. 현재까지 물품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인 B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구입처인 피고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존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별지]

목 록

1. 포항시 남구 공장용지 2533㎡지분 등의 표시 : 위 소유권 중 3분의 1지분 단, 지분 전부2. 포항시 남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업무시설

주 지하1층 국가기관청사 77㎡

주 1층 국가기관청사 467.6㎡

주 2층 국가기관청사 445.6㎡

지분 등의 표시 : 위 소유권 중 3분의 1지분 단, 지분 전부, 끝.

